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30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2.

발 의 자 : 김영진 · 안호영 · 염태영
조승래 · 권칠승 · 안태준
윤후덕 · 소병훈 · 유동수
김한규 · 송기현 · 서삼석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로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음.

그런데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과세가 이연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어 연금계좌의 과세이연 혜택이 감소하고 이중과세 문제 등이 지적되었음.

이에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을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57조의2 및 제129조제5항 신설 등).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종합소득금액”을 “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”으로, “종합소득산출세액”을 “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중 “종합소득산출세액”을 각각 “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종합소득산출세액”을 “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”으로 하고, 같은 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$$\text{공제한도금액} = A \times \frac{B}{C}$$

A: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

B: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(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자의 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)의 합계액

C: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

제129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6항) 중 “제5항”을 “제6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(중전의 제7항) 본문 중

“제5항”을 “제6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제5항제2호”를 “제6항제2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9항(중전의 제8항) 중 “제7항”을 “제8항”으로 한다.

⑤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. 이 경우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공제하는 금액은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소득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연금계좌에 대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57조의2제1항 및 제2항, 제12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연금계좌로 지급된 소득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소득을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7조의2(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) ① 거주자의 <u>종합소득금액</u> 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<u>종합소득산출세액</u> 에서 공제할 수 있다.	제57조의2(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) ① ----- --- <u>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</u>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과 <u>종합소득산출세액</u> 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</u>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종합소득산출세액</u> 에서 공제하는 금액: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	2. <u>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</u> ----- ----- ----- -----

③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(이하 이 항에서 “공제한도금액”이라 한다)을 한도로 한다.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.

$$\text{공제한도금액} = A \times \frac{B}{C}$$

A: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

B: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(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)의 합계액

C: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

④ (생략)

제129조(원천징수세율) ① ~ ④

③ -----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-

$$\text{공제한도금액} = A \times \frac{B}{C}$$

A: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

B: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(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)의 합계액

C: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29조(원천징수세율) ① ~ ④

(생 략)

<신 설>

⑤ (생 략)

⑥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은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127조제1항제2호의 소득에 제1항제2호나목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“공제한도금액”이라 한다)을 한도

(현행과 같음)

⑤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. 이 경우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공제하는 금액은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소득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.

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

⑦ 제6항-----

로 한다.

⑦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이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간접투자외국법인 세액을 납부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해당 소득에 대한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. 다만,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증권의 전부 환매 또는 전부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제5항제2호의 금액이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.

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
규정한 사항 외에 간접투자회
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
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
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
다.

⑧ 제6항

-----제6항 제2호

_____.

⑨ -----제8항
